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가)

1.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2.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청가서의 제출)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가의 허가) 구성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체에 통지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규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